18세기 평안도 저항세력 성장의 사회적 배경

吳 洙 彰

머 리 말
1. 統治體制의 미비
2. 사회 질서의 변화
3. 文武 교육 기회의 증가
맺 음 말

머 리 말

平安道는 우리 국토로 확정된 시기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의 徙民 정책과 농업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下三道 지역 등에 비해 안정된 사회를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16세기 이래 조선의 향촌 질서와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士族 세력이 결집되지 못함으로써, 그 지역민들이 정치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 사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평안도에는 강력한 지배구조와 힘을 갖춘 士族이 없었기 때문에, 중남부 지역에 비해 향촌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적었으며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좀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앙 정치에 소외됨으로써 여러 권익을 침해받았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사회 역량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한편 자연 조건이 농업에 불리하였으나, 국제 교역과 국내 상업의 양 방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18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을 바탕으로 평안도에서 儒生과 武士들이 성장

(1) 吳洙彰, 1995「17, 18세기 平安道 儒生·武士層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奎章閣』18, 서울대학교 奎章閣, 참조.

하고 중앙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性理學이 전파되었고, 儒任·鄕任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지배층 안에서 새로 士人層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평안도의 유생들은 학문적 수준이나 이념적 지향에서 당시의 지역 차별을 극복할 역량을 축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숙종대 이후 文科 급제자가 급증하여 정조·순조 연간에 이르러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8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평안도와 함경도의 문과 급제자들은 承文院分館을 허락받지 못하여 권위있는 官人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다. 평안도 유생들은 천거를 통해 山林職에 임명되거나 문과를 거쳐 言官에 임명된 인물이 없지 않았지만, 숙종대에는 정6품 관직에 도달하는 것으로 거의 예외없이 중앙에서의 관직 생활을 마감하여야 했으며 19세기까지도 6품을 넘어서는 관직으로의 진출은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2)

평안도 武士들 역시 중앙 진출에서 큰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상업 중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과에 많은 급제자를 냈으며,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장기간에 걸친 엽관운동을 하는 인물들이 흔하였다. 하지만 무과는 권위가 계속 하락하면서 관인 임용고사의 성격을 상실하였고, 武班 관직 후보자들이 심하게 밀려있는 상황에서 평안도 급제자들은 지역적 차별을 받아서 적체가 더 심하였다. 무엇보다도 서북 무사들에 대한 宣傳官薦 불허의 관행이 원천적인 장애가 되었다. 숙종대에는 서북 무신 중 사정이 나은 인물들이 종6품 참상관에 겨우 오르는 수준이었으며 수령으로 나간 경우도 거의 없었다. 영조나 정조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무사들을 국왕호위 부대인 龍虎營에 집단적으로 소속시키는 등 특별히 배려하였지만, 18세기 후반에도 서북의 무과 급제자들은 守門將, 部將, 邊將만을 지내고 실직에서 물러나고 말 뿐이었다. 그리하여 평안도에서 무사로서 진출하려는 기운은 꺾이고 말았다. 향촌 권력을 장악하는 데 무사보다 유생이 훨씬 유

(2) 吳洙彰, 1995「17, 18세기 平安道 儒生層의 정치적 성격」『韓國文化』1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참조.
———, 1996「朝鮮後期 平安道 儒生層의 중앙 진출과 그 한계」『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참조.

리하였던 것도 그러한 추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평안도 사회의 상층민인 유생들과 무사층이 중앙의 정치질서에 편입하려 한 노력이 18세기 말 실패로 귀결된 것과 짝하여 그곳에서는 기층 사회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세기 초엽에 발발한 洪景來亂은, 조선왕조의 지배체제가 勢道政治로 대표되는 말기적 현상을 노정함과 동시에 기층민의 저항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모순에서 빚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평안도에서 일어난 데는 위와 같은 그 지역 나름의 사정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洪景來亂 연구에서는 중간층을 주도세력을 설정하거나[3] 그 항쟁이 수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지역 지배층의 투쟁이었다고 설명하려 하였다.[4] 그러나 필자는 洪景來亂의 주도세력은 '저항지식인'과 '壯士層'으로서, 대부분 농민들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공유하면서 사회 기층에서 성장한 저항세력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5] 이 글에서는 평안도 상층민의 중앙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홍경래난을 주도함으로써 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게 되는 그 지역의 저항세력이 성장한 사회적, 경제적 토양을 설명하고자 한다.

1. 統治體制의 미비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은 향촌지배체제가 완고하지 않아 그 내부에서 지배층으로 상승하기 위한 경쟁이 비교적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동시에 적어도 17세기까지 조정에서 그 지역의 도적이 논의된 사실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民 상호간의 질서를 안정되게 유지

(3) 鄭奭鍾, 1972 「'洪景來亂'의 性格」『韓國史硏究』 7, 韓國史硏究會.
鶴園裕, 1979 「平安道農民戰爭における參加層－その重層した性格をめぐって－」『朝鮮史叢』 2, 靑丘文庫, 日本 神戶.

(4) 高錫珪, 1990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지역 鄕權의 추이」『韓國文化』 11,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硏究所.

(5) 吳洙彰, 1992 「'홍경래난'의 주도세력과 농민」『1894년 농민전쟁연구 2 －18·19세기의 농민항쟁－』, 한국역사연구회.
———, 1993 「洪景來亂 봉기군의 최고지휘부」『國史館論叢』 46, 국사편찬위원회.

하였다.(6) 그러한 향촌의 자체적인 질서와 짝하여, 관의 통치 체제는 다른 지역보다 정비되어 있지 않았음이 여러 현상을 통해 나타난다.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향촌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賦稅制度였으며, 田政은 적어도 이념적으로 국가 부세제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평안도는 이른 시기부터 삼남 등 다른 지역과 전정의 운영 내용이 크게 달랐다. 임진왜란 후인 선조 37년에 경기·황해·강원·평안·함경도에 양전을 시행하였지만, 그 중 평안도만은 전란을 겪으면서 흩어진 토지 대장을 정비하지 못하고 매년 그해 경작한 토지의 규모를 다른 해와 비교하여 收稅하도록 하였다.(7)

영조 11년에 이르도록 평안도는 부세 징수에 恒式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정해진 시기도 없이 '일이 있으면 걷고 경비가 모자라면 걷었다'는 것이다.(8) 18세기 중반인 영조 21년 관서심리사 李日躋는 평안도의 폐단을 전답에 일정한 부세가 없고, 軍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재물을 절도있게 쓰지 않고, 백성들은 분수를 지키지 않는다고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9) 田政과 軍政의 문제는 수립된 제도가 문란해졌다기보다는 제도와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수준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田稅를 중앙으로 상납하지 않아 정부의 직접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큰 이유가 되었겠지만, 숙종대 자료에서 보듯이 餘結과 隱結, 그밖에 實結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개인 소유로 삼은 장부 외의 加耕平田은 황해도 함경도와 더불어 평안도에 가장 많은 실정이었다.(10) 그런 사정은 후대로도 계속되어, 영조

(6) 吳洙彰, 앞의 「17, 18세기 平安道 儒生·武士層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7~8면.

(7) 『增補文獻備考』 권141, 「田賦考」1 宣祖 37년 (東國文化社 영인본 中卷 629면 나)

(8) 『承政院日記』 英祖 11년 1월 10일 신사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제44책 285면 다)
(宋)眞明曰 平安道詳定一事 非可已而不已也 凡賦斂於民者 宜有恒式 而關西則其所徵斂 無時無節 有事則斂 乏用則斂 如新官私費 舊官治行 進封求請 各項情債 官中細瑣私用 多有別收斂之邑 又有一年三四次輪回錢 民生倒懸

(9) 『承政院日記』 英祖 21년 6월 4일 을사 (제54책 20면 가)
關西審理使 李日躋曰 西路之弊 大者有四條 田無常賦也 軍無定額也 財不節用也 民不安分也

(10) 『典錄通考』 「戶典」, 諸田 (法制處 간행본 320면)

18년에 전국의 隱結을 조사했을 때 절대 면적이나 實結에 대한 은결의 비율은 평안도가 8도 중에서 가장 컸다. 그곳의 은결이 모두 부세 부과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 아니고 民庫와 각종 雜費에 충당되기도 하였지만, 전정 운영의 비공식적인 부분이 가장 큰 지역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11) 그리하여 평안도에는 전정이 정비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었다.(12) 19세기 초엽에 평안도 암행어사 吳翰源이 올린 별단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한 문제는 청북지역에 漏戶와 虛結이 많다는 것이었다.(13) 그러한 면모는 民이 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그대로 이어졌다. 숙종 34년에 암행어사로 파견된 李縡의 별단에 지적된 바와 같이, 평안도는 大同法이 시행되지 않아 각읍간에 경제적 차이가 심하고 民들이 지는 役의 정도가 각기 달랐다고 한다.(14)

민에 대한 통제의 허술함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났다. 18세기에 이르러서도, 비록 平安道 道科라고는 하지만 文科에 급제한 인물들 중에도 3년마다 한번씩 개정되는 戶籍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정도로 관의 파악이 느슨하였다. 더구나 그들의 사정을 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급제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言官이 공개적으로 건의할 정도였다.(15)

통제력의 한계는 변경지역에 대해 더욱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8세기 들어와서도 평안도 위원에서는 국경을 넘어가 淸人을 죽이고 蔘을 약탈한 중죄인의 탈옥을 막지 못하였으며, 탈옥하지 않은 나머지 5·6명도 강계로 이송할 때 그 친척들에 의해 탈취당하고 말았다.(16) 특히 그 중의

(11) 鄭演植, 1993『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21면

(12) 예를 들어『日省錄』純祖 5년 12월 16일 을미 (제32책 1007면 다)「平安道淸南御史 洪秉喆別單」
田政字號 陳起之紊亂 莫甚於此道 均是一等田一日耕 而定稅執卜 輕重判異 査正之策 莫急於改量

(13)『純祖實錄』純祖 즉위년 12월 무진 (제47책 349면 나)

(14)『繡衣錄』(서울대학교 奎章閣도서, 古4250-102)「丙戌年 平安道暗行御史 李縡書啓」
出役多少段 本道無大同之法 邑制之豊薄不同 民役之苦歇各殊 課外徵斂 不一其端 而亦非一人一時之所剏 積成謬例 貽弊甚多爲白乎旀

(15)『肅宗實錄』肅宗 43년 9월 무인 (제40책 674면 나)

(16)『肅宗實錄』肅宗 36년 11월 기해 (제40책 374면 라)

李萬建 등은 다시 잡혀 정배되었으나 탈출에 성공하였고, 숙종 39년에 거듭 체포되어 유배갈 때도 총과 창으로 무장한 그 무리가 습격하여 구출해 갔다.(17) 사건이 일어나 조정에서까지 크게 문제되었는데도 犯越者들을 둘러싼 집단이 조직적으로 무장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사헌부의 탄핵에 의하면, 양덕에서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을 수령이 체포하였으나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빼앗아 가기를 세번이나 되풀이 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聽政 중이던 세자는 수령을 파직하자는 언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8) 평안도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평안도의 자체적인 사회 질서까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 31년에 평안도에 나갔던 암행어사는 국왕에게 그곳 풍속이 도망가기를 잘한다고 보고하였다.(19) 앞시기에는 거론되지 않던 도적들의 존재가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영조 14년에는 三登縣의 강도들이 포를 쏘고 불을 밝히면서 관부에 돌입하여 勅需庫를 약탈하였다.(20)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관서 전역에 도적이 만연하는 사태가 빚어지곤 하였다. 영조 17년의 논의는 청남 청북을 가릴 것 없이, 풍년이라면 각지에 흩어져 平民이 될 무리들이 흉년 때문에 모여들어 도둑이 되어 있던 상황을 전하여준다. 도둑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들과 인접한 지역에는 營將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으며, 신하들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서·관북·해서의 도적들이 서로 연락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였다.(21) 이즈음 평안도의 양덕·맹산·삼등 지역은 명화적의 활동 근거지가 되어 있었다.(22) 특히 이때 평양의 도적 무리는 廢四郡

(17) 『肅宗實錄』 肅宗 39년 8월 임인 (제40책 514면 가)
(18) 『肅宗實錄』 肅宗 45년 9월 기축 (제41책 83면 다)
(19) 『承政院日記』 英祖 31년 1월 28일 임인 (제62책 69면 나)
(平安道暗行御史 黃仁儉曰) 平安道風俗 善爲逃亡矣 紀律駭然 故臣治罪首將校矣
(20) 『英祖實錄』 英祖 14년 12월 무술 (제42책 608면 다)
(21) 『承政院日記』 英祖 17년 1월 6일 임신 (제50책 525면 다)
(22) 한상권, 1990 「18세기 중·후반의 농민항쟁」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연구 2 —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84면

團이라는 명칭까지 붙어 있었음이 잘 알려져 있다.[23]

평안도, 특히 압록강변 지역은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변방일 뿐만 아니라 지형이 복잡했으므로, 토지에서 유리되거나 범죄를 짓고 피해다니는 인물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 영조 7년에 관서 암행어사 李宗城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압록강변의 理山에는 죄를 지어 유배되었다가 몰래 도망한 자가 아니면 주인을 배반한 私奴, 鄕里에서 용납받지 못하는 惡人 등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고 있었다고 한다.[24] 또 영조 9년의 경연석상에서 知事 尹游는 압록강변은 '奸民'이 모여들어 숨는 소굴[逋逃藪]이 되었다고 단언하였다.[25] 이러한 사정도 18세기 이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는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이 많이 모여 있었으므로 사회 질서의 儒敎的 측면은 더욱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영조 11년의 지적에 나타나듯이 평안도의 그러한 면모는 조정 관인들 사이에 '풍속이 겉만 꾸미고 성실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비추어졌다.[26] 영조 15년에 암행어사 李性孝도 관서의 풍습을 '壞亂'이라고 평가하였다.[27] 그러한 사회 분위기는 정조대로 이어졌다. 18세기 말에 평안도관찰사에서 올라온 李命植은 그곳의 인심과 풍속이 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父子兄弟의 人倫과 上下尊卑의 分數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기성 지배 질서를 수호하려는 당국자의 관점에서 나온 표현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평안도의 사회 질서에 적지않은 변화가 빚어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28]

---

(23) 『英祖實錄』 英祖 17년 4월 임인 (제43책 11면 가)
개설서의 서술 예로는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69면

(24) 『承政院日記』 英祖 7년 6월 16일 정미 (제40책 80면 다)
(御史李宗城曰) 以理山一邑言之 戶數則一萬二千零 而軍額則只是五百 甚無謂也 盖此屬 非得罪流配而潛逃者 卽是私奴之橫叛其主者 惡人之不容於鄕里者 類皆桀黠難制之徒也 驅十數萬桀黠之民 置之窮山深谷 無所羈縻 無所統領 而終得帖然 臣不敢保此也

(25) 『英祖實錄』 英祖 9년 10월 경오 (제42책 385면 나)

(26) 『承政院日記』 英祖 11년 1월 10일 신사 (제44책 286면 가)

(27) 『承政院日記』 英祖 15년 9월 9일 계축 (제49책 243면 라)
李性孝曰 … 關西風習 大抵壞亂

(28) 『正祖實錄』 正祖 11년 12월 무신 (제45책 679면 나)

하급 신분의 인물들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었다. 영조 7년 관서 암행어사 李宗城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梁千碩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양·안주·강계 등지에 거주하면서 장예원 서리와 결탁하여 허위 立案을 만들어 평안도의 부유한 노비들에게 값을 받고 免賤帖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당시 2년간 평안도 노비 대장에서 빠져나간 수가 800명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현상은 전국에서 평안도가 특히 심하다고 평가하였다.(29) 영조20년에 同知事 柳復明도 관서의 민폐를 진달하는 상소에서, 各司와 內需司의 노비는 양서에 제일 많아서 과거에는 각읍에서 신공을 바치는 부유한 자들이 수천명에 이른 경우가 많았지만 모두 빠져 나가 그 시점에는 丐乞에 지나지 않는 200~300명만 부담을 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30) 평안도에 거주하는 공노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역으로부터 벗어나 전반적으로 지위가 상승하였고, 매우 빈곤한 자들 소수만 남아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기가 내려갈수록 기존 체제로부터 일탈하는 인물들이 나올 여지도 점점 높아져 갔다. 순조 8년 평안도 암행어사 徐能輔는, 평안도에서는 관부의 재정이 많이 비축되고 이식 사업이 활발히 행하여지는 틈을 타서 '浮浪破落'의 무리가 자기 친척이나 인척 중에 資産이 있는 인물이 있으면 관의 곡식과 자본을 마음대로 빌려다가 유흥에 탕진한 후 부유한 친지로 하여금 그것을 담당하도록 한다고 지적하였다.(31) 같은 내용이 이후의 암행어사에 의해 거듭 지적된 것을 보면, 그 상황은 특정인의 단편적인 관찰이 아니고 평안도 사회의 일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32)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새로운 성격을 지닌 사회 세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기성의 지배체제에 회의하고 나아가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인물들이 활동할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召見 前平安道觀察使李命植 命植奏曰 臣審察西路事情 人心風習 如前判異 甚或不知有父子兄弟之倫 上下尊卑之分

(29) 『承政院日記』 英祖 7년 6월 16일 정미 (제40책 79면 라)

(30) 『承政院日記』 英祖 20년 4월 14일 신유 (제52책 110면 가)

(31) 『日省錄』 純祖 8년 9월 7일 경오 (제35책 244면 나)

(32) 『日省錄』 憲宗 8년 8월 16일 임진 (제53책 571면 라)

2. 사회 질서의 변화

평안도 사회 질서가 삼남의 士族支配體制와 매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음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와 같다. 그곳 풍속에는 성리학적 향촌질서 이전 단계의 면모가 많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초반 평안도 암행어사 呂必禧는 관서에 대하여, 특히 청천강 이북이 풍속이 더욱 어지럽고 흐리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천하여 의지할 데 없는 무리들이 다른 집에 寄食하다가 집주인이 죽으면 산발하고 상복을 입어 부모의 상을 입는 것과 같이 한다고 보고하였다.(33) 청북의 사회 상황이 家父長的 宗法를 바탕으로 한 향촌 질서와 크게 달라 그곳에 파견된 암행어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듯하다.

그러한 사회 질서의 특징은 주민들의 일체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인 영조 47년, 평안도의 기근이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도 '평안도의 인심이 매우 좋아 누가 비록 한번 먹을 것만 가졌더라도 반드시 나누어 먹는다'고 설명되었다.(34) 영조 48년의 具允鈺도 평안도는 토지가 척박한데도 민간의 인심은 다른 도보다 낫다고 하는 등,(35) 그곳 인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풍속은 경제력의 차이에 의하여 사회 신분이 계속 분화되는 중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계속되었다. 정조 14년 평안도에 기근이 들자 부유한 자들까지 가난한 자들의 구걸 때문에 함께 유리하였다는 사실은, 큰 기근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는 빈부에 관계없이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6) 그것은 단편적인 평가가 아니었다. 같은 때 암행어사로서 평안도를 돌아본

(33) 『肅宗實錄』 肅宗 40년 7월 갑자 (제40책 533면 다)
初 平安道暗行御史呂必禧書啓 歷擧西關風俗 其略曰 … 至於淸北 一倍棼濁 貧賤無依之類 仰哺他家 則家主之死也 散髮服衰 一如蒙父母之喪

(34) 『承政院日記』 英祖 47년 5월 14일 갑인 (제73책 708면 가)
命讀趙曮緘答 … (申)晦曰 西土人心極好 一人雖有一時之食 必也分食矣

(35) 『承政院日記』 英祖 48년 5월 3일 정유 (제74책 356면 바)
上問(具)允鈺曰 關西風俗 何如 允鈺曰 自是瘠土之民 人心勝於他道矣

(36) 『正祖實錄』 正祖 14년 3월 계사 (제46책 105면 가)

李冕膺도, 먹는 데 대한 걱정이 없는 부유한 家口라 하더라도 이웃과 친족이 몰려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여 집과 토지를 팔고 떠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37) 이러한 상황이 부유한 계층의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더라도, 평안도에서 상층민에게 고통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민의 요구가 중앙 관인의 눈에 특이하게 비쳐질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강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평안도의 공동체적 사회 질서는 단순히 고유의 風俗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분적 우위를 누리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평안도의 풍속이 본래 諄厚하여 門地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았다'는 숙종 5년 閔宗道의 발언을 뒤집어, 門地의 높고 낮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속이 諄厚하였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38)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경제 질서에도 연결되었을 것이다.

서북 지역에서는 원래 부세 징수에서 관의 개입이 강하지 않고 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면모가 강하였던 데다가,(39) 부세 부과의 새로운 방식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軍政에 변화가 커서 일찍이 戶布法을 평안도에 실시해보자는 논의가 정부에서 크게 일어났었다. 숙종 7년에 군정에 대한 전면적 개혁안이 모색될 때 평안감사 柳尙運과 병사 李世華가 평안도민이 호포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戶布制는 신분에 따른 부세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단순한 재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 극복에도 중요한 단계를 이룰 수 있는 제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대부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을 관서에서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은 그 지역에 사

(37) 『日省錄』 正祖 14년 3월 24일 갑진 (제15책 867면 가)
關西暗行御史李冕膺別單 … 稍裕之戶 非有艱食之憂 而亦不堪於隣族之替納 又無賴於乞丐之侵掠 大者斥賣田廬 牛輸馬載 皆期樂土之適 小者弊屣鶉衣 顚連道路

(38) 『承政院日記』 肅宗 5년 12월 5일 병인 (제14책 560면 나)
(閔)宗道曰 臣習知西路風俗 本來諄厚 不論門地之高下

(39) 李瀷, 『星湖僿說』 卷10 「人事門」 西北民心條 (민족문화추진회 간행본 제4책, 원문 56면)
賦於民 常制之外 官與民 不相涉也

족이 없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40)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사족이 존재하지 않는 관서 지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현지 주민에 의해 나타나고 있었다.

조정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숙종 34년, 18세기 초엽에 이미 '서북 감영과 병영의 軍兵은 면포를 징수하고 말 뿐이어서 군대를 급히 동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삼남에서 束伍制가 허술해졌던 것보다 심한 상태였다고 한다.(41) 그것은 부세제도의 문란으로만 보기보다 군정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조 2년 蔡濟恭의 지적에 따르면 평안도에서는 良民이 役을 피하는 길이 많아, 한번 風憲이나 約正을 지내면 軍額에서 벗어나게 되어 良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족적 지배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전통적 속박이 강하지 않던 지역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부담을 軍籍에 계속 묶여있는 소수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공동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面里에서 계를 조직하고 군포를 공동으로 걷어 납부하는 것이 이미 규례를 이루어 쉽게 고칠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戶布制와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지만, 부세 부담 방식에서 발전된 측면을 내포하였으며 새로운 부세 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이루는 것이었다.(42)

정조 11년 양서암행어사 李崑秀의 보고에 의하면 戶布法이 평안도의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 丁若鏞 또한 『牧民心書』에서 서북 지역에서는 호포법과 다름없는 軍布契가 발달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순조 21년에는 평안도관찰사 鄭晩錫이 정부의 결정도 없이 戶布制를 실시하였다 하여 큰 논란이 빚어졌는데,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戶布法에 준하는 군

(40) 鄭演植, 앞의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126~134면 참조.
(41) 『承政院日記』 肅宗 34년 1월 14일 임술 (제23책 700면 라)
(42) 『承政院日記』 正祖 2년 10월 10일 병인 (제79책 329면 마)
(蔡)濟恭曰 關西軍政 自古面里代定 而良民之避役者多端 一經風憲約正 皆免軍役 軍額則多 而良丁則絶無 故自面里 作契收斂 備納軍布 已成規例 猝難變通 此實有異於戶布

역 운영방법을 택하여 大小 民人을 구분하지 않고 군포를 거두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43) 특히 이곤수의 보고에 나타나듯이 18세기 후반에 평안도에서 시행되고 있던 호포제는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그 전까지 身役이 없던 儒鄕들에게도 새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괄목한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軍役을 지우는데 鄕族을 고려해 주지 않고 오로지 '戶'만을 따른다는 정조 3년 江界民의 원정에서도 확인된다.(44)

평안도의 몇 읍에서는 軍政의 개선 방식이 戶錢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조 14년 양산군수 南鶴聞이 상소에서 지적하였듯이 戶錢은 한 지역의 戶에서 다같이 돈을 걷어 軍布를 충당하는 공동체적인 운영 방식으로써, 관서의 몇 읍에서 새로 시작하였는데 민이 원망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軍兵도 남의 부담까지 대신 질 걱정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5)

조선후기의 새로운 질서가 다른 지역보다 평안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民庫 運營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民庫의 설치와 운영은 후에는 결국 農民 수탈의 방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지만 新鄕으로 표현되는 신흥 향촌 세력에 의한 경제 질서를 반영하였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부세제도 변천의 대세였다.(46) 그런데 應捧 應下의 조건과 數를 節目으로 확정하여 民庫를 운영한 것은 다른 지역에 앞서 평안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그곳에서는 영조 8년 감사 宋眞明에 의한 '關西詳定(壬子定式)'을 비롯하여, 영조 21·22년 사이에 감사 李宗城에 의해 마련된 '民庫節目', 어사 李崑秀의 건의로 인해 정조 17년에 마련된 '平安道內各邑民庫定例節目', 순조 1년의 '辛酉節目'과 순조 22년의 '壬午定式' 등에 의해 民庫 운영

(43) 高錫珪, 1990「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지역 鄕權의 추이」『韓國文化』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71~375면

(44) 『日省錄』正祖 3년 3월 12일 정묘 (제4책 348면 라)
刑曹啓言 昨日還宮時 江界民金殷建 白活於衛外 而其原情 則本邑民人 過半逃散 邊上難以守防把守 軍役毋論鄕族 一從戶名爲之事矣

(45) 『承政院日記』正祖 14년 8월 9일 정사 (제89책 323면 라)
梁山郡守南鶴聞疏曰 … 所謂戶錢云者 分斂一境之各戶 以充軍布之元數者也 夫戶布之議 發於朝廷之上 盖久矣 而迄今不行 … 臣曾聞西關數三邑 行戶錢之法 民無怨苦之意 軍免推剝之患云

(46) 張東杓, 1990「조선후기 民庫 운영의 성격과 運營權」『碧史李佑成敎授 停年退職紀念論叢-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창작과비평사, 897면

이 규정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이것은 평안도에서 民庫의 폐단이 극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그 원칙들이 정조·순조대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어 나간 추세를 보면 조선후기 民庫의 운영질서가 평안도 지역에서 선도되고 있었다고 하는 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47)

남쪽에서는 都結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에 부세가 모아지고 있던 것에 비해, 평안도에서는 戶에 부세가 모아지는 상황이었다. 순조 5년 평안도청남어사 洪秉喆의 별단에 의하면 양덕에서는 경작 상황을 확인하고 징수해야 하는 火稅를 경작 여부도 따지지 않고 戶마다 2두씩 걷어 들이고 있었으며, 德川에서도 토지 면적을 조사하고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일 없이 坊이나 洞에 일정액을 물리는 방식으로 부세 징수방식이 바뀌고 있었다.(48) 그러한 현상은 田政이 정비되지 않은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평안도의 여러 상황이 戶稅와 같은 새로운 부세징수 방식를 수립해나가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조선후기 환곡 운영의 변화도 평안도 지역에서 그 선구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한다. 還政은 원래의 목적인 진휼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고 일종의 부세제도로 성격이 변하면서 점차 그 부담을 모든 民戶가 나누어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하였으며, 民戶의 부담 등급을 나누는 것도 사람 수만을 기준으로 하던 데에서 더 나아가 차츰 家産을 참고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갔다. 그런데 평안도, 특히 청북 지역에서는 그 중 마지막 형태가 일찍부터 '大中小排戶之法'으로서 일반 法처럼 통행되고 있었다고 한다.(49) 그것은 부민층의 부담의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시대적 의미는 달리 따져볼 필요가 있으나, 환곡 운영의 시기별 변화가 평안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평안도 지방 재정의 운영에서도 위와 같은 변화의 추세가 확인된다. 영조 33·34년 경 평안감사로 있던 閔百祥은 營勅庫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47) 金容燮, 1980「朝鮮後期의 民庫와 民庫田」『東方學志』23·24합집, 31~44면 참조

(48) 『日省錄』純祖 5년 12월 16일 을미 (제32책 1010면 가)

(49) 梁晋碩, 1989「18, 19세기 還穀에 관한 硏究」『한국사론』21 ; 高錫珪, 앞의「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 지역 鄕權의 추이」, 371면

官과 民에게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재정운영 방식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지역 전체의 재정 논리가 새로운 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營勅庫의 운영방식은 황해도에서도 따라 시행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할 만큼 선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또한 영조 45년에는 경기감사 金華鎭도 자기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선혜청을 담당한 비변사 당상과 경기도 구관당상에게 시행 여부를 논의하게 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50)

평안도에서는 확고한 신분적 우위를 누리는 계층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 간의 일체감이 늦게까지 강하게 남아 있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18세기부터는 부세징수 등에서 좀더 진보적인 성격을 지니는 제도들이 다른 지방에 앞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위의 여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文武 교육 기회의 증가

조선후기에는 교육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지식인이 量産되었다. 먼저 科擧 운영에 그러한 현상이 크게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하층민을 자극하여 그들의 교육 기회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조 20년의 사례를 보면, 경연 석상에서 庭試 시행을 요청했다는 소식만으로 지방의 무사와 유생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으며 결국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예정하지 않은 文武科를 따로 시행하기로 하였다.(51) 이미 17세기 전반에 지방 지식인의 과거 지향은 과거 시행 자체를 좌우할 정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빚어진 과거의 '문란'이나 '부정'도 좀더 발전적인 시각에서

(50) 『承政院日記』 英祖 45년 5월 21일 임인 (제72책 288면 라)
引見 (洪)鳳漢曰 此京畿監司金華鎭狀啓也 … 故相臣閔百祥 爲關西伯時 設立營勅庫 規模均齊 官民俱賴矣 海西亦爲繼行 則必多其益 本道方伯 已有料量云 卽今關西例爲之 而備堂中鄭弘淳 旣兼惠廳 李潭 又是本道句管 使之內外消詳 使速成就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51) 『仁祖實錄』 仁祖 20년 8월 계해 (제35책 135면 나)

볼 필요가 있다. 영조대에 科場이 소란스러워 밟혀죽은 자가 발생한 것도 각도를 달리하여 생각한다면 조선후기에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유생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과거장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빚어진 일이었다.(52) 정조 18년의 三日製는 공식 문과가 아니고 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받을 1인, 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받을 100여인을 뽑는 시험일 뿐이었는데도 응시한 유생이 23,900 명에 달하여 과거 장소로 예정된 인정전 뜰을 넘어 금천교 밖까지 채웠으며 답안을 거둔 것이 10,568 장에 이르렀다.(53) 가장 권위있고 높은 수준인 궁궐에서의 考試 상황이 이와 같았으니 지방에서 수시로 행하는 각종 등급의 여러 科試에 포섭되던 인원은 짐작하기 쉽지 않다.

집권층으로서도 그러한 다수 지식인의 욕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국정 개혁안의 일부로 문과 급제자를 줄여 정치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주장(54)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과거의 시행이 더욱 잦아지고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던 것은 그러한 사회변화에 직면한 집권층의 불가피한 대응 방식이었다. 서울에서 주로 시행되던 과거의 각종 시험이 점점 지방에서 시행되도록 변화되어 갔고, 19세기 중반에는 그것이 제도 개정으로 이어진 것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憲宗 10년의 과거제 논의는 크고 작은 모든 科擧의 초시를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설행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서울에서만 실시해오던 武科 알성정시의 초시도 그 몇년 전에 증광시·식년시와 마찬가지로 각도에서 시행하게 하였는데, 성과가 좋았다 하여 文科의 알성정시까지 초시를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것이 온 나라에 소외되는 인물이 없도록 하고 지방 선비들의 고생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것이었다.(55) 이 건의는 대신들의 의견을 모아본 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56) 이러한 조처가 최종 급제자를 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문무 과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던 사정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52) 『英祖實錄』 英祖 49년 10월 을사 (제44책 464면 나)
(53) 『正祖實錄』 正祖 18년 2월 기묘 (제46책 450면 나)
(54) 대표적인 예는 李瀷, 『藿憂錄』 「朋黨論」
(55) 『日省錄』 憲宗 10년 11월 10일 계유 (제54책 772면 나)

조선후기 지식인의 확산은 과거 응시자의 수준에서뿐 아니라 더 낮은 신분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주로 書堂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보통 교육은 신분이나 경제력이 낮은 인물들에게도 지식을 보급하였다. 영조 초년의 것으로 짐작되는 『牧民攷』는 양반의 특권을 중심에 두는 신분 관계를 고수하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常漢' 중의 '稍解文字者'를 이용하여 민을 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57) 18세기 후반 정조대에는 천민 신분의 인물이 문서를 다루는 서리의 역할을 맡아 국왕의 수원 행차 업무에 참여하고 그 공로에 의해 공식적으로 免賤帖을 발급받은 사례가 확인된다.(58)

18세기, 특히 그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평안도 지역에서도 보통 교육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평안도는 전통적으로 무예의 고장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특히 영조·정조의 정책에 의해 '文學' 교육이 억제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조 7년의 「諸道御史賚去事目」의 평안도편에서는 '近年以來 습속이 변하여' 書堂이 마을마다 늘어서고 鄕祠가 읍마다 멋대로 세워진 것을 비판하면서 어사로 하여금 그것을 규찰하게 하였다.(59) 몇해 뒤 어사의 보고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 11년 평안도 암행어사 李崑秀는 그곳에서 장교나 군졸의 아이들이 모두 책을 끼고 공부할 계획을 품고 있었으며 변방 鎭堡의 사람들까지 무예를 닦는 자들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것은 군역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을 비판한 내용이었지만, 평안도에서 교육의 기회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음을 전하여 준다.(60)

정조 2년 의주부윤으로 있다가 올라온 李命植의 설명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좀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무력을 양성하기 위해 書齋 운영이 금지된 의주에서마저 洞里마다 그것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상황

(56) 『日省錄』 憲宗 10년 12월 10일 임인 (제54책 797면 나)

(57) 鄭萬祚, 1988 「朝鮮後期의 鄕村敎學振興論에 대한 檢討－地方官의 興學策을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10 國民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35～137면

(58) 『園幸乙卯整理儀軌』 권5, 「賞典」 顯隆園親祭時施賞 (奎章閣 소장본 奎14532, 서울대학교 奎章閣 영인본, 제2책 426면)

(59) 『正祖實錄』 正祖 7년 10월 정해 (제45책 406면 라)
關西 我國武剋 素稱關西 而近年以來 習俗寢變 不尙弓馬 假托儒名 書堂遍列於各社 鄕祠擅建於各邑 冒犯法禁 憑藉收斂 爲弊百端 莫可沮抑

이었다. 그 설치의 주체는 鄕人들이었지만 그들만의 힘으로는 모자라므로 常漢이나 閑散 계층과 함께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교육의 효과는 책 몇 권을 익혀 성명을 적는 데 그칠 뿐이라고 하였다.(61) 동리마다 '常漢의 아이'들까지 鄕人層 자제들과 함께 서당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교육의 결과에 대한 이명식의 냉소적인 평가도, 뒤집어본다면 당시 중앙의 지배층이 인정할 만한 학문과는 전혀 수준을 달리하는 인물들이 광범위하게 人文 敎育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교육의 성격이 달라진 것이다.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吳仁祿은 1811년 '洪景來亂' 당시 철산의 田案監으로서 수령이 봉기군에게 제출할 항복 문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鄕族에 들지 못한 평민이었으나 일찍 부모를 잃고 달리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해 오로지 글을 다루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읍의 문서를 잘 다루어 鄕人들의 천거로 田案監에 차출되고 賑恤監을 겸하여 향인의 대열에 올라섰다.(62) 평안도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기존 지배층과 성장 과정을 달리하는 새로운 지식인이 아래로부터 떠오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렇게 새로운 성격의 지식인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을 터이지만, 신분 차별이 크지 않은 평안도에서 보통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보아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주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향을 갖고 사회

---

(60) 『正祖實錄』 正祖 11년 4월 계축 (제45책 647면 다)
大抵 西路風俗 多不守分 退校老卒之兒 皆懷挾册之計 邊塞鎭堡之人 絶無操弓之類 家産稍饒者 百計行賂 或陞鄕 或陞校 一經校鄕 數世免役 如是之故 閑丁一縮 小民偏困

(61) 『承政院日記』 正祖 2년 8월 24일 신사 (제79책 244면 가)
(李)命植曰 … 義州處於江邊直路 專尙武力 故曾有書齋禁令 而歲久漸弛 今則殆乎每洞里無不有之 其爲弊又有甚大者 所謂鄕人首倡建置書齋 迎來學究 以其獨自接待之難 遍求常漢閑散輩之有童稚者 與之同力 受得幾卷書 其所謂文字 不過記姓名而已 自幼不把鋤 長而不操弓 平生只作浪散之人 無所成就 甚可矜悶

(62) 『關西平亂錄』 제12책 壬申 6월 6일 (日本國會圖書館支部靜嘉堂文庫 소장, 亞細亞文化社 영인본 제3책 432~433면)
閑良吳仁祿 年三十九 … 本以鄕外之人 早喪父母 生道末由 以書役 專爲生涯 故由前以來 邑中各樣文書 (2字 未詳—필자)書寫 而鄕中諸人 以矣身謂善寫之人 昨年差出田案監 而兼行賑恤監

적 성장과 상승을 꾀하는 인물들과, 정치적 저항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새롭게 자각하면서 서서히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는 사회층이 중시되었다.(63)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기층민 가운데서의 지식인 성장이 사회적으로 색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평안도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차별받는 평안도의 하위 계층 인물들이 설령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족 지배층에게 인정받을 수준에 도달하고 기성 체제를 통해 진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앞에 소개한 이명식의 발언에서, 의주에서 글공부한 자들이 '이름을 쓰는 데 머무를 뿐 농사를 짓거나 무예를 익히지도 못하여 평생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 이루는 바가 없다'고 한 내용은 교육의 확대와 그로 인한 지식의 습득이 기존 체제에 포섭되지 못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분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에 평안도에서는 새로운 성격의 지식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정조 7년에 마련된 「諸道御史賚去事目」에서는 특히 평안도에 대해서 '妖書를 끼고 左道를 강하여 惑世誣民하는 일'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영변의 百嶺防과 성천의 神仙窟을 지적하여 행동과 언어가 수상한 자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64) 당시 인근 주민들이 神仙이라 부르고 관인들은 妖人이라고 지칭하는 인물들의 활동이 그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占書·地術書 등을 익혔으며, '귀신과 접하고 점술을 신통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65)

19세기 순조대에는 궁궐에 잠입하는 등 변란을 꾀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언행에 '關西秘記'니 '關西妖書'니 하는 서적들이 나타났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시기에 이르러 평안도의 지식인들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이념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66) 18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의 이념적 동향이 그러했던 것은 18세기

(63) 한명기, 1990 「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264~272면

(64) 『正祖實錄』 正祖 7년 10월 정해 (제45책 406면 라)

(65) 『密啓』 (奎章閣 소장본, 奎19566) 「平安道觀察使臣徐浩修密計」

(66) 『純祖實錄』 純祖 4년 3월 병오 (제47책 479면 다) ; 같은 책, 純祖 4년 9월 경자 (제47책 491면 가)

중반까지만 하여도 평안도의 인심이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되던 것에 비해 커다란 변화였다.(67)

조선후기 기층민의 역량 축적은 지식 뿐만 아니라 무예의 측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문과의 응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예를 익혀 진출하고자 하는 인물도 크게 늘어났다. 물론 평안도가 아니더라도 조선후기 무사의 성장을 자극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조 12년에는 과거를 통과하지 않은 武人도 五衛將이나 僉使를 역임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간혹 골라서 수령에 의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하급 무사들이 성장하는 데 간접적으로라도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68) 정조 또한 試射 등에서 뛰어난 자를 등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활쏘는 재주를 시험했을 때 장원한 자는 '白徒常賤'이라도 바로 6品職에 올려 文班의 正職을 제수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이 말은 무과 급제자로 散職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여 실직을 줄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하층민조차 試取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잡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69)

함경도와 함께 예로부터 무예의 고장으로 강조된 평안도에 대해서는 각종 명목의 試射·試取를 비롯하여 뛰어난 무사들을 양성하고 등용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효종 3년에 창설되고 그 이후 증설된 평안도 別武士도 그 지역에 대한 무사 양성책의 한 예였다.(70) 게다가 서북지역에 특히 주목하여 무사 양성책을 추진한 영조·정조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평안도민이 무예를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앞시기보다 훨씬 넓어졌다. 정조 6년 평안도 무과에서는 柳葉箭 과목에 입격했으나 鐵箭의 기능이 떨어지는 무사들을 시험관들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격에서 제외한 일이 있었다. 국왕은 그들이 명령을 어겼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감

(67) 吳洙彰, 1995「17, 18세기 平安道 儒生·武士層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奎章閣』18, 7~8면 참조.

(68)『典錄通考』「吏典」守令 (法制處 간행본 232면)
白徒武人 經五衛將僉使 有表著之績者 間或擇擬守令

(69)『正祖實錄』正祖 20년 7월 신유 (제46책 662면 라)

(70)『典錄通考』「兵典」軍制 (法制處 간행본 554면)

사와 함께 추고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탄핵하지 않은 三軍門의 將臣들까지 從重推考하였다.(71) 道科를 통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평안도 무사들을 끌어들이려 한 정조의 정책을 읽을 수 있다.

문반 관인으로의 현달이 어려운 평안도민으로서 낮은 처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무예를 닦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왕 앞에서 무예를 시험하는 西北別付料 試射에서는 武科조차 통과하지 않은 한량들이, 品階의 권위가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종2품인 嘉善大夫의 인물들과 나란히 재주를 겨루고 같은 상을 받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72) 이것은 상급 무사들의 지위가 하락하였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서북인들이 무과와 같은 절차를 하나하나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널리 열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조 50년에 평안도에 武科 道科를 시행했을 때 무려 4만여 명에 달하는 무사들이 응시하여 국왕으로부터 감탄을 산 일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다.(73) 정조 6년에 평안도의 武科 道科에 응시한 인원도 일만 명에 이르렀다.(74)

그러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사로 입신할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크게 열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원자가 많아질수록 실제 진출하는 인원의 비율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기가 내려올수록 무사로서 관직이나 관권에 접근하는 데는 경제력이 점점 중요해져 갔다. 평안도의 각종 都試는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 무과 급제의 여부에 따라 무과 전시에 直赴하거나 변장으로 나가는 상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감영의 장교로 진출해 있는 자들이 禮錢을 거두어들이는 까닭에 가난한 무사들은 응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75) 무사로서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는 데 예전에 없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경제력이 열악

(71) 『承政院日記』 正祖 6년 10월 5일 무진 (제82책 574면 라)
(72) 『日省錄』 正祖 20년 4월 2일 정축 (제23책 745면 가)
(73) 『承政院日記』 英祖 50년 10월 3일 계미 (제76책 5면 가)
又讀西路試才重臣狀啓 至武擧錄名數 四萬餘人 上曰 壯矣
(74) 『承政院日記』 正祖 6년 10월 5일 무진 (제82책 574면 라)
(75) 『日省錄』 純祖 8년 9월 7일 경오 (제35책 245면 라)

한 무사들은 중앙 관직은 고사하고 지방의 將官과 같은 자리에도 들어가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무사의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경제력이나 사회적 처지가 낮은 인물들이 무사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정조대에 평안도에서 선발하여 상경시키던 別付料 무사들의 수준이 낮아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 장령 權坪은 才藝를 따지지 않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올려 보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76) 都試를 통한 무사 선발도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았다. 조금 후대인 순조 24년의 지적이지만, 도시가 점점 유명무실해져서 응시조차 하지 않은 인물이 입격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서울 거주자가 지방에서 선발되는 자도 있어서, 활도 잡을 줄 모르는 인물들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설명되었다.(77)

무과에 급제하였다 하여도 시골 무사들은 관직을 얻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영조대 朴文秀의 설명에 의하면 병조판서를 맡고 있는 그의 집에 벼슬을 구하러 찾아오는 무사들이 하루 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엽관운동은 경쟁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시골 무사로서 서울에 올라온 자들이 여러 해 여관에 묵으면서 전토를 팔아 마련한 비용을 쓰다보면 돌아갈 곳도 없어지고 처자는 고향에서 아사하며 본인도 결국 흘러다니며 구걸하다 북망의 귀신이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78) 위와 같은 지적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헌납 閔瑗도 무과 급제자들이 근력과 신수가 출중하더라도 문벌이 없으면 농사나 짓다가 늙어죽는 자가 7, 8할이 되며 서울에 올라와 여러 해 벼슬을 구하다 재산을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수를 셀 수가 없다고 하였다.(79) 나아가 官品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堂下官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였고 그나마 軍門의 재정은 모두 권세있는 자들에게 들어갔다고 한다. 따라

(76) 『正祖實錄』 正祖 15년 5월 무인 (제46책 220면 나)

(77) 『日省錄』 純祖 24년 6월 9일 신축 (제45책 162면 라) 「掌令 朴榮顯 上疏」
都試에 대한 내용은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하였지만 朴榮顯이 평안도 정주 출신이며 상소의 전후 내용이 모두 평안도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아 都試 상황도 평안도 현실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박영현의 출신지는 『關西平亂錄』 제1책 壬申 4월 11면 (제1책 115면) 참조.

(78) 『英祖實錄』 英祖 18년 8월 정유 (제43책 66면 다)

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무사들의 경우는 '누각에 올라간 후 사다리를 없애버린' 격이고, 여기저기 청탁을 다녀 벼슬을 구하는 자들은 길을 다니며 걸식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될 정도였다.(80)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차별까지 받고 있는 평안도의 무사들이 무과에 급제한 후 순조로운 진출을 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서북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무사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 간 것은 19세기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전반적인 무예의 하락과 공정하지 못한 선발로 빚어진 일이었다.(81) 그것은 평안도에서 무과에 급제한 것만으로 끝나는 인물이 열에 여덟 아홉이 된다는 사정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82)

결국 무예를 갖춘 평안도 인물들이 국가 체제 내에서 성장해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미 영조 연간에 지적된 바와 같이 평안도 무사들이 무과에 급제해봐야 중앙으로 진출하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급제를 원하지 않고 별무사로 들어가려는 자도 심히 적었던 사정은 그 이후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83)

지식과 무예를 갖춘 새로운 성격의 인물들이 성장하는 데는 확대된 평안도의 경제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영조 17년에 평안도의 도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왕은 평안도에서 人事와 事理에 밝은 자가 가담하여 水滸傳의 양산박이나 송강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을 심히 우려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관서가 옛날부터 繁華하고 饒富한 땅이므로 豪俊한 인재들

(79) 『承政院日記』 英祖 18년 12월 27일 임자 (제52책 97면 나)
獻納閔瑗上疏 … 武科取人 務廣額數者 盖出於國初勸武之意 而人多窠窄 不得錄用鄕曲之人 膂力身手 雖或出衆 苟非門閥 則老死畎畝者 十常七八 旅食京師 積年求仕 而傾財破產 狼貝還土者 不可勝計 怨咨朋興 有足矜悶

(80) 『承政院日記』 正祖 15년 10월 20일 신유 (제90책 44면 마)
且況堂下軍銜 久未霑祿 鄕居承召之人 便若登樓去梯 軍門斗料 皆屬有勢 旅托求仕之類 殆近行路乞食

(81) 『日省錄』 純祖 1년 3월 22일 무술 (제30책 175면 나) 「命 別付料抄上之法 更加嚴明」

(82) 『日省錄』 純祖 5년 12월 16일 을미 (제32책 1009면 다)
平安道淸南御史洪秉喆別單 … 無剋寢衰事 登武科終身不改先達之名者 十居八九

(83) 『承政院日記』 英祖 17년 4월 8일 임인 (제50책 760면 다)
聞西路物情 武士不願爲及第 別武士願屬之類 甚少云 何以慰悅西土將士乎

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閔應洙도 평안도의 상업을 바탕으로 하여 호준한 자가 많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 즈음에 강조된 서북인 등용 정책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84) 새로운 사회세력의 구성원 개개인이 경제력으로 여유있는 자였거나 개인적 경제력을 바탕으로만 독립된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 혹은 일부 세력의 여유있는 경제력이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는 지식이나 무예를 갖춘 새로운 성격의 인물들을 길러내는 토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맺 음 말

평안도에서는 원래 정부의 행정력이 중남부 지역에 비해 늦게까지 확립되지 못하였다. 부세제도, 특히 田政은 18세기까지 정비되지 못하였고 민에 대한 행정력도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향촌의 자체적인 질서는 다른 지역보다 안정되어 있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난다. 앞 시기에 평안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도적의 존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그런 현상을 반영한다. 그런 가운데 사회 질서의 유교적 측면은 더욱 크게 흔들리고, 하급 신분의 인물들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열리게 되었다. 시기가 내려갈수록 기존 체제로부터 일탈하는 인물들이 나올 여지도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보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평안도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평안도에는 士族이 없어, 중남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士族支配體制와 달리 성리학적 향촌 질서가 수립되기 이전 단계의 면모가 많이 유지되고 있었다. 확고한 신분적 우위를 누리는 계층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가 한층 강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평안도 사회는 진보적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선도하

(84) 『承政院日記』 英祖 17년 1월 6일 임신 (제50책 525면 다)

게 되었다. 서북에서는 원래 부세 징수에서 관의 개입이 강하지 않고 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면모가 강하였던 데다가, 신분제 극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戶布法이 평안도에서는 18세기 이후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평안도 田政에서의 '戶稅', 軍政에서의 '戶錢' 제도의 시행, 民庫 운영에서 節目을 세운 것 등도 모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제도를 선도하거나 새로운 부세제도 운영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還政에서도 家産을 참조하여 부담을 지우는 '大中小排戶之法'이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은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 지역이었다고 한다. 평안도 감영의 재정에 營勅庫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도 다른 지역에서 본받고자 한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진보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제도들의 시행은 새로운 기층 사회세력의 성장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후기의 교육 보급은 전국적인 사정이었지만, 평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신분 차이가 심하지 않고 경쟁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基層民들에 대한 교육 또한 더욱 활발하였다. 의주의 상황에 나타나듯이, 국가의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에는 '常漢의 아이'들까지 鄕人層 자제들과 함께 서당 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학습의 수준은 당시 지배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 결코 높은 것이 못되었지만, 기존 체제에 포섭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킬 가능성은 매우 컸다. 실제로 18세기 후반의 평안도에서는 체제와 어긋나는 지식인들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 중앙의 주요 경계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무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세기에 특히 강화되었던 서북 무사 우대정책은 평양의 武科 道科에 4만명이 응시한 때가 있었을 만큼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배체제로의 진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무예를 갖춘 평안도 인물들이 국가 체제 내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18세기의 평안도 상황 속에서, 지배체제의 밖에서 성장하거나 체제로부터 배척당하는 '抵抗知識人'들과, 武力을 몸에 갖추었으되 경제력이나 신분이 사회 상층에 속하지 못하여 기존 체제에 귀속처를 지니지 못한 '壯士層'이 점차 늘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1811년의 홍경래난을 주도함으로

써 자신들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게 되었다.

(필자 :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